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로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 억제로 환경보호에 기여

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에 이바지

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량제 봉투 등 제작 사양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폐기물 처리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및 추가품목 신설(안 제6조, 별표 1)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 고
폐소화기	15kg 이상	7,000	상위법 개정 에 따른 항목추가
	7kg ~ 15kg	5,000	
	3.3kg 이상	3,000	
	3.3kg 미만	2,000	
침대(돌, 옥, 황토)	2인용	30,000	품목신설
	1인용	2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비데	모든규격	3,000	
타이어	림외경 19인치 이상	5,000	
	림외경 19인치 미만	3,000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제6조, 별표 1)

종 별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100kg 이하	7,800	
		100kg 초과 100kg 마다	7,800 추가	
		5톤 미만	390,000	

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라. 종량제 봉투 규격 정비(안 제15조, 별지 서식)

구 분	음식물쓰레기봉투		불연성(매립용)마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규 격	3ℓ, 10ℓ, 20ℓ	20ℓ	20ℓ, 30ℓ	10ℓ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 규격 삭제
- 본래 취지에 맞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만
사용토록 불연성마대 용량 축소

마.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안 제16조)

· 구미시청노동조합 단체 협약

바. 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안 제17조)

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및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종합허가과와 합의되었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거나, 제6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

상 폐기물과 동일한 성상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ℓ 당”을 “리터당”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를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그 양이 1일 50리터 이하일 때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30”을 “30퍼센트”로, “10ℓ, 20ℓ”를 “10리터, 20리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를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ℓ, 10ℓ, 20ℓ”를 “20리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을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을 “3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읍·면·동의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제17조제2항 본문 중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ℓ 범위에서 지급 가능”을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자가 요양원 입소, 병원 입원 등으로 3개월 이상 부재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전입자가 구미시 전입 전 구입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인증스티커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입인증스티커의 배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부수량 : 세대당 20매까지. 다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외한다.

2. 신청기한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동법 영 제50조에 따른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50”을 “5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시장”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를 신설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량제 봉투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6조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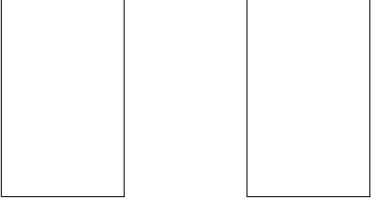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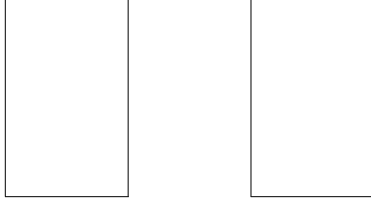
[illegible]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 전 제 품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기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5조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http://www.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20ℓ)

—— 음식물 쓰레기 전용 ——

1.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3.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http://www.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재사용)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종량제봉투는 저녁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환 및 환불되지 않는 봉투입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http://www.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불연성(매립용)마대 제작사양

[앞 면]

[뒷 면]

이 선위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구미만들기

불연성(매립용) 마대
(Ø)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가정에서 배출하는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소량의 쓰레기입니다.
3. 이 마대외의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0조제2항 관련)

종류	업소이윤 (원)	기간별 판매가격(원)		
		2013.8.31까지	2013.9.1부터	2014.9.1부터
봉투 3ℓ	3	40	50	60
봉투 5ℓ	7	80	100	120
봉투 10ℓ	14	160	170	200
봉투 20ℓ	28	310	330	410
봉투 30ℓ	41	460	490	500
봉투 50ℓ	72	800	860	900
봉투 100ℓ	145	1,610	1,710	1,800
마대 10ℓ	100	1,000		

비고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begin{aligned} \text{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el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 \\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end{aligned}$$

비고 2. 마대 판매가격 산정방법

$$\text{마대 판매가격} = \ell\text{당처리비용}(100\text{원}/\ell) \times \text{마대용량}(\ell)$$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대행지정 업 체	업 체 명		업 종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행업체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		폐기물량	톤/일	
대행지정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일련번호	
(읍면동 보관용)					
배출자 (건물주)		생년월일			
		연락처			
배출장소 (주소)					
공사업체명		공사내용			
공사업체대표자		연락처			
공사업체주소					
폐기물종류		공사기간 중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반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락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제6조제6항제2호) 2. 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읍면동장	결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일련번호	
(환경자원화시설 제출용)					
배출자 (건물주)		주민번호	-		
		연락처			
배출장소 (주소)					
공사업체명		공사내용			
공사업체대표자		연락처			
공사업체주소					
폐기물종류		공사기간 중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반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락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제6조제6항제2호)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				신청번호	
(배출자, 읍면동 보관용)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자와의 관계		차량번호		
	폐기물종류				
	공사기간 중 총 예상 배출량		현장확인 일		
현장사진					
위치도 (구미시 ○○○동 번지) ※지번 주소 기입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위 한 목 적 으 로 한 다 . ○ 항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확인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배출자는 사본을 보관(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 (읍면동 보관용)						신청번호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배출자와의 관계		☐ 본인, ☐ 공사 계약상대자, ☐ 기타				
배 출 현 황	배출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장소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예상기간						
확인자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배출장소 현장 확인일				공사기간 중 총 예상 배출량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위 한 목 적 으 로 한다.							
○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출장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존기간인 3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폐기물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반입처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정동에 사전 신고합니다.(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계 장		읍면동장		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거나, 제6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

⑦ 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⑧·⑨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ℓ 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에 반입·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생략)

<신설>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과 동일한 성상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하며 -----.

⑧·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리터당 -----

-----.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다가구주

제13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7조제3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

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그 양이 1일 50리터 이하일 때에는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이 1일 50ℓ 이하 발생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생략)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을 기준으로 하되 10ℓ, 20ℓ는 옅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봉투용량 중 3ℓ, 10ℓ, 20ℓ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삭 제>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퍼센트 -----

----- 10리터, 20리터-----

-----.

③ -----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

④ ----- 20리터 -----

전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
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
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
미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
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
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
매) ①·② (생략)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
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
다.

④ ~ ⑦ (생략)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퍼센트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
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환경관
리원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

다. <단서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읍·면·동의 반장

3.·4.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
는 월 60ℓ 범위에서 지급 가능

<신 설>

<신 설>

--. 다만, 둘 이상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
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자

2. 읍·면·동의 반장, 새마을지
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3.·4. (현행과 같음)

② -----

----- 120리터 범위에서 지
급하며 지급주기는 규칙으로 정
한다. -- 60리터 범위에서 지급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
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자
가 요양원 입소, 병원 입원 등으
로 3개월 이상 부재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전입자가 구미시 전입 전 구
입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인증스티커를 배부받아 사용할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
다.

②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
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1단

수 있으며, 전입인증스티커의
배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부수량 : 세대당 20매까지.
다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
외한다.

2. 신청기한 : 전입신고 후 1개
월 이내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
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동법
영 제50조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50퍼센트-----

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 9. 생략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의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

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기준

91-19-00 폐소화기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이 운 균
	담 당 자	이 재 향 (480-5204)